

후대교배종 면화 GHB614xLLCotton25x15985

1.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제12조 3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제4-9조

2.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

	모품종 1	모품종 2	모품종 3
Event 명	GHB614	LLCotton25	15985
특성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저항성	글루포시네이트 제초제 저항성	해충저항성
심사완료일			

3. 심사경위

- '08.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
- '10.10.20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

4. 심사결과

- GHB614xLLCotton25의 *2mepsps* 및 *bar* 유전자에 의한 제초제 내성에, *cry1Ab2* 및 *uidA* 유전자에 의한 해충저항성에 대한 포장시험결과를 보면 양친과 유사하게 면화의 잎, 봉우리, 커널에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어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후대교배종에서의 2MEPSPS, BAR CRY2AB2, UIDA 단백질은 모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형질발현에 있어 상호작용이 일어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Southern blot 결과를 보면 양친의 유전자가 각각 안정적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삽입된 유전자의 핵산 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